



1 내 벌과금 조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서 나의 사건조회뿐만 아니라, 내가 납부해야 하는 벌과금 조회를 통하여 납부 금액과 전자납부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벌과금 납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벌과금은 보통 가납부 단계(확정되기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확정 후에는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약식 사건은 언제 납부명령서를 받게되나요?

→ 법원의 선고, 확정, 검찰의 조정절차를 거치므로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하기까지 통상 2개월~ 6개월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4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낼 수 있는가요?

→ 벌과금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사이트 (<https://www.giro.or.kr>)에서 직접(공인인증서 필요) 납부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현재 가납벌과금(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벌과금)은 신용카드 납부 불가

5 벌과금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나요?

→ 벌과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분납 및 납부연기 신청하여 허가되면 분납 및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6 벌과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 확정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지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기초 생활

수급자와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로, 이때 자격여부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한내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되며,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구치소(또는 교도소)에 노역장유치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등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강제집행 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계좌 압류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벌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했는데, 계좌 압류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계좌 압류 문자를 받은 경우, 납부자는 해당계좌에서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계좌압류 해지는 벌금을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 해당계좌에서 벌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자 본인의 추심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심절차진행은, 검찰청에서 은행측에 추심신청을 하고, 납부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 동의를 하면, 은행에서는 납부자 계좌에서 검찰청 추심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 추심금이 입금된 후, 계좌압류를 해지하게 됩니다.